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369 지방세 감면 및 기납부 세액 경정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취득세 및 재산세를 별지1 기재와 같이 감면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9. 2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원주시 C(필지번호 D, 지정용도 일반공업, 면적 13,2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억 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3,523.91㎡의 건물 4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대상	과세연월	세목	세액
1	이 사건 토지	2018년 3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9,403,890원
2	이 사건 토지	2018년 9월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4,941,860원
3	이 사건 건물	2019년 6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84,985,160원
4	이 사건 토지	2019년 9월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6,582,610원
5	이 사건 건물	2020년 7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8,243,710원
6	이 사건 토지	2020년 9월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5,272,480원
7	이 사건 토지	2021년 7월	재산제, 지방교육세 등	합계 8,379,230원
8	이 사건 건물	2021년 9월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5,551,040원

다. B가 2016년 7월 발간한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이하 '이 사건 분양안내서'라 한다)'에 의하면, ① ○○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게 "취득세는 15년간 100%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며,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는 내용,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 B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B의 홈페이지에도 위 ①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21.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행자이자 원고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자인 피고의 '고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따라 그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9. 29.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나.항 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별지1 기재 각 취득세 및 재산세를 별지1 기재와 같이 감면할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피고가 위 감면 의무를 이행하거나 피고에게 위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 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1) 피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 및 감면권을 갖고, 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B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법규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B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조성 및 분양되는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5조 제1항). 여기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분양안내서가 조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4, 8,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실, B는 1. 처분의 경위 다.항 기재와 같은 조세 혜택이 시행중일 당시 피고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위 조세 혜택을 기재한 사실, 위 조세 혜택은 2016. 1. 1.부터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위 조세 혜택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최초 작성 당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위 조세 혜택이 폐지된 이후에도 B 또는 피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위 조세 혜택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성격은 B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의 분양을 홍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물에 불과하며 그 작성 주체도 B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B 분양 담당 직원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앞서 원고에게 조세 혜택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확인을 구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하단에는 "상기 혜택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앞서 피고에게 위 조세 혜택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기재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별지1

1. ◯◯시 C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 취득세 및 재산세
2. 위 1.항 기재 각 취득세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33. 3. 21.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3. 위 1.항 기재 각 재산세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23. 3. 21.까지는 전액을 면제하고, 2023. 3. 22.부터 2026. 3. 21.까지는 50%를 감경한다.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끝.